1. 개 요

KIWA KOREA 로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이하 “인증조직”이라 함)은 인증유효 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 국제기준 및 인증원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서면, 인증원 발행 간행물 등으로 공지하며, 최신내용은 인증원 Home-page(www.kiwa.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증조직은 인증자격유지와 관련하여 KIWA KOREA 와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서면으로 협의된 사항은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인증조직은 인증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불만사항 및 제안사항을 유선 혹은 E-Mail 을 통해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으며, 불만처리절차에 따라 Feedback 될 것입니다.

2. 인증조직의 기본 준수사항

2.1 적용 규격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2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2.3 조직의 내부심사는 연 1 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2.4 심사의 독립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2.5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상태에 대한 언급하거나, 인증서, 인증마크, 인증사실 홍보 시, ‘인증마크사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6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7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8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2.9 인증범위가 축소가 되는 경우, 관련된 모든 홍보물을 수정해야 합니다.

2.10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KIWA KOREA 가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2.11 인증은 인증범위 내의 활동에 국한되어 적용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12 인증기관 및/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13 심사비 등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4 인증신청 및 자격 유지과정에서의 KIWA KOREA 와 인증대상 조직 사이의 모든 인증관련 서류를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2.15 인증신청 및 자격 유지과정에서의 불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는 KIWA KOREA 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6 KIWA KOREA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른 모든 의사소통 기록 및 시정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KIWA KOREA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7 인증조직은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KIWA KOREA 가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30 일 이내에 이를 KIWA KOREA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 및 핵심 경영진의 변경

(2) 인증조직의 이전

(3) 인증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변경)

(4) 인증조직 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5)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6) 조직의 개편

(7)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8) 인증매뉴얼의 개정 및 관련 표준류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규 추가사항 발생

(9) 중대한 품질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기타 경영시스템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11)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4. 사후관리심사

4.1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2 사후관리심사의 주기

(1) 최초심사 후 사후관리심사는 6 개월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일수 및 심사주기는 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2) 갱신심사 이후 사후관리심사는 시스템 성숙도에 따라 6 개월, 9 개월 혹은 1 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사후관리심사는 최소 1 년 이내에 1 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갱신심사 시 또는 갱신심사 이후의 사후관리 심사결과 중부적합이 발생된 경우에는 차기 사후관리 심사주기를 6 개월로 조정합니다.

(5) 최초심사 및 갱신심사 이후 1 차 사후관리심사 시기는 인증심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이후의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전회 정기 사후관리 현장심사 시점에서 산정합니다.

4.3 사후관리심사 시 주요 심사항목

(1) 내부심사

(2)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검토

(3) 불만의 처리

(4) 조직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5) 지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 경과

(6) 지속적인 운영관리 상태

(7)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8) 인증마크 사용상태 및/또는 기타 인증에 대한 언급

(9) 이전 심사팀에서 차기 심사 시 심사대상항목으로 특별히 지정한 내용 등

5. 특별사후관리심사

5.1 정기 사후관리심사 외에도 특별사후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조직이 필요 시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2 특별사후관리심사 실시 사유

(1) 인증조직의 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예: 합병, 인수 또는 합작을 포함한 소유주 변경 및 현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물의,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인증이 정지된 조직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인증심사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사항(예: 인증제도의 변경 등)에 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중대한 품질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인증조직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6. 인증정지

인증등록조직은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인증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1) 인증등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효력 정지를 원하는 경우

(2)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4)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에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 내에 시정 및 시정조치가 별도의 협의 없이 제출되지 않고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5) 인증자격유지를 위한 심사에 불응하거나 인증등록 조직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7) 인증제도 및 인증원의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 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8) 인증표시 등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방법이 요구된 기준을 벗어난 경우

(9)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0)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11)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12) KIWA KOREA 와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인증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4) 사후관리심사가 인증(전회심사)일 이후 1 년 이내에 실시되지 않거나, 갱신심사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15) 기타 인증시스템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7. 인증취소

인증등록조직은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인증 효력이 취소가 됩니다.

(1) 인증등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2) 현장확인심사가 연속적으로 2 회 실시된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현장 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 발생된 경우)

(3)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 회 이상 정지된 경우

(4) 인증 효력이 정지된 후 3 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5) 시스템 인증제도 또는 규격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KIWA KOREA 로부터 통보 받았으나 정하여진 기한 내에 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6) 인증등록 조직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증자격 유지기준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WA KOREA(키와 코리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397-0101, Fax: 02-3397-0105, iso@kiwa.kr)